

부패 방지 정책

제정일자	최종 수정일	개정차수
2023.02.10	2024.07.05	2

효성중공업(주)(이하 “회사”)은 고객사, 협력사, 경쟁사 및 정부기관을 대할 때 정직, 신뢰성, 투명성을 우선으로 한다. 회사의 정책은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OECD 뇌물방지협약 등 전 세계의 부패 방지 법률 및 규정(이하 총칭하여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및 기본원칙

- 1.1 본 부패 방지 정책(이하 “본 정책”)을 통해 회사는 회사 임직원에게 뇌물 수수 또는 제공 금지 및 부패 방지 의무를 알리고,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1.2 회사는 모든 종류의 부패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뇌물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그러한 수수 또는 제공을 약속, 제안하는 행위는 본 정책에 의해 금지된다.
- 1.3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 및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회사 임직원 본인이 본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또는 다른 임직원이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강령 또는 내부 고발 정책을 따라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 2.1 ‘뇌물’이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 접대, 서비스, 선물, 편의 제공 등의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① 수령인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생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②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령인이 속한 조직 또는 단체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행위
 - ③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 승인, 계약, 기타 혜택 등을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행위
- 2.2 ‘부패’란 공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를 조장하기 위해 권한을 오용, 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2.3 ‘선물 및 접대’란 특정한 사업 및 영업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 숙박, 교통비 및 향응 등 금전적·비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항목을 의미한다.
- 2.4 ‘급행료’란 공무원 등으로부터 통관, 비자, 사업 허가, 사업 면허 취득 등 일상적인 조치를 확보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뜻한다. 정부기관이 정한 수수료 등을 합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2.5 ‘정부기관’에는 국가, 주 또는 지방 정부(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 이들이 소유하거나 출연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는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 연구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공립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한다),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권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 본다.
- 2.6 ‘공무원 등’은 정부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부기관을 위하여 공무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공 국제기구의 종사자 또는 대리인, 선출자, 공직 후보자, 정당의 임원, 직원, 대표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부패 방지 정책

제정일자	최종 수정일	개정차수
2023.02.10	2024.07.05	2

3. 적용범위

- 3.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계열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법인 및 단체와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3.2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이하 “협력사”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3.3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소재지(또는 행위지)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부패 금지

- 4.1 회사 임직원이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모든 회사의 거래에서 뇌물을 포함한 부패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4.2 회사 임직원은 부정한 이익의 확보 또는 부당한 영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다음의 단체 및 해당 단체 소속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 선물 및 접대, 급행료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정부기관(정부 소유 또는 출연 단체, 정부 운영 단체 포함)
 - ② 공공 국제 기구(예: 유엔 또는 세계 은행)
 - ③ 정당 및 공직 후보자
 - ④ 비정부 단체(NGO)
 - ⑤ 민간 기업
- 4.3 뇌물 또는 부패 행위를 통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 자체로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뇌물을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실제로 회사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책 위반으로 간주한다.
- 4.4 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사업 및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의 협력사 등으로부터 뇌물, 선물 및 접대,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 4.5 뇌물을 포함한 부패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회사 임직원의 책무이다.

5. 선물 및 접대 금지

- 5.1 회사는 선물 및 접대가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감사의 표시로써 그 내역이 기록되고 회사의 윤리 강령과 본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5.2 그 외의 경우에 선물 및 접대를 주고 받지 않기 위하여 회사 임직원은 선물 및 접대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 선물 및 접대에 비례하는 가치를 주고 받을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령인 또는 제공인으로 하여금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선물 및 접대를 주고 받지 않아야 한다.
- 5.3 선물 및 접대가 입찰, 협상, 제안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선물 및 접대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회사 주주, 소비자 등으로부터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선물 및 접대를 주고 받지 말아야 한다.

5.4 회사 임직원은 선물 및 접대가 수령인 또는 제공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현지 법률 또는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5 회사 임직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선물 및 접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하여 직속 상사 또는 다른 상위 임직원과 상의해야 한다.

6. 급행료 금지

급행료는 일반적으로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며, 급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7. 정치, 지역사회 및 자선 기부

7.1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정치적 기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이 허용하는 정치적 기부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정치적 기부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적 기부를 하기 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7.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프로젝트, 국내외 자선 단체 및 기타 수혜자에 대한 기부를 허용한다. 단, 외국을 기반으로 한 자선 단체 및 기타 수혜자에 대한 기부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회사를 대신하여 자선 기부를 하기 전에 회사의 자선 기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

8. 제3자를 통한 부패 방지

8.1 본 정책은 뇌물, 선물 및 접대, 급행료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제3자 또는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회사 임직원은 제3자나 중개자가 다음을 포함한 잠재적 위반 징후를 보일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 ① 제3자 또는 중개자의 소재 국가가 뇌물 수수로 알려져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뇌물 수수에 대한 정기적인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 ② 제3자 또는 중개자의 평판 및 관계
- ③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커미션, 보너스, 리베이트 등
- ④ 제3국 은행 계좌에 대한 지불 요청, 비정상적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은행 계좌 등
- ⑤ 비용 또는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문서의 부재
- ⑥ 기타 유사한 의심스러운 행위

8.2 회사가 중개인으로 하여금 뇌물, 선물 및 접대, 급행료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패 행위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각 국의 부패방지법령에 따라 임직원 개인과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 회계 및 기록 보관

회사 임직원은 각 거래 또는 금전 지불을 회사의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회사 장부 및 기록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부패방지법령과 회사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10. 보고 및 관리체계

공무원 및 고객, 협력사 등의 관련자가 회사 임직원에게 접근하여 직간접적으로 의심스러운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직속 상사 또는 상위 임직원 또는 감사 부서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상위 직책에 있는 사람은 차례로 그러한 상황을 회사의 법률 고문 또는 최고 준법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사 임직원은 회사 내부 고발 지침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11. 주관부서의 책임과 권한

11.1 회사는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할 준법지원 담당 임원을 지정, 선임한다.

11.2 준법지원 담당 임원은 회사의 부패 방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책임을 가지며, 업무 이행을 관장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1.3 준법지원 담당 임원 아래에 부패 방지 규정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법지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11.4 준법지원팀은 부패 방지 활동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한 연 단위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이행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12. 실행방안 및 목표

12.1 회사 및 임직원은 뇌물수수를 포함하여 반부패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2.2 전사 대상으로 부정부패 주제를 포함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임직원 100%가 수강을 완료하도록 한다.